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가능기간 확대 〉

■ 김형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98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가능기간 확대	3

I. 제안경위

2024년 12월 4일 김형동위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에는 병원진료 동행, 출산준비 등 임신한 배우자와 태아 돌봄을 위해 휴가 사용이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기간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Ⅲ. 검토의견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가능기간 확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 ----- 임신 및 출산을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③ -----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설>	⑥ 배우자 출산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¹⁾

그런데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에도 병원진료 동행, 출산준비 등 임신한 배우자와 태아 돌봄을 위해 휴가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현재는 행정해석을 통해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출산 전 상황에 맞게 탄력적인 활용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배우자의 임신기간에 대한 남성근로자의 돌봄 여건을 조성하려 한다는 데에 입법의 의의가 있음.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는 태아의 급격한 성장으로 임신한 여성의

-
- 1)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해져 배우자의 돌봄이 요구될 수 있고, 출산 준비 과정도 부모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바, 개정안이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출산준비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모 맞돌봄 문화와 출산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배우자와 태아를 충분히 돌보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가능기간을 확대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9